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돌봄기금 설치〉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03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돌봄기금 설치(안 별표 2)	2
2.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수정 요청의 서면 통보 (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9.

다. 회 부 일 :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및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돌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돌봄기본법 (돌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돌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돌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돌봄기본법안」
기금명	돌봄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및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생애 전주기에 걸친 돌봄정책의 추진 ◦ 돌봄의 질 제고 및 제공 확대 ◦ 제26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돌봄인력의 권익 향상 및 양성 ◦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돌봄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 돌봄제공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관 리	◦ 돌봄청장

「돌봄기본법안」(이하 “돌봄기본법안”이라 함)은 돌봄²⁾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환자, 출산을 전후한 여성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관리, 의식주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성장발달 지원, 생활 보조 등의 활동

돌봄은 모든 사람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임.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을 오랫동안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돌봄 부담이 사회참여를 제약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한편, 초저출생·초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핵가족화로 인해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돌봄인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전환 없이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돌봄정책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 중심으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체계의 공통된 비전과 방향이 부재한 상태이며, 파편화된 제도로는 복합적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산재된 돌봄정책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이에 따라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돌봄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돌봄 관련 사업들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既지원 중으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할 실익이 적으며, 정부출연금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낮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3)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돌봄기금의 재원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상 복권 판매를 통한 복권수익금은 합리적 배분 및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광범위한 공공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정책 역시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용도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⁴⁾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⁵⁾에 따른 과징금은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

4)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적 금전부담으로, 단순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범위 내 또는 일정 비율을 추가 부과하는 등 징벌적·규율적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해당 과징금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규율수단으로 기능하며, 그 재원이 보험제도 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돌봄기금의 목적사업과 직접적 연계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의 과태료는 신고의무, 자료 제출의무, 기록·보존의무 등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경미한 질서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제도 운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특정 정책사업 재원으로 귀속될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그 성격상 돌봄기금의 용도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돌봄정책은 아동·노인·장애인·청년 등 대상별·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돌봄기본법안에서 추진하려는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돌봄인력의 권익 향상 및 양성, 돌봄제공기관 육성 지원 등은 다년도에 걸친 투자와 정책 간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단년도 예산구

조보다는 기금 방식의 신축적 재원 운용이 보다 필요한 측면이 있음.

특히 초저출생·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긴급·단기 돌봄수요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기금을 통해 시기·대상·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7호, 이하 “복권법개정안”이라 함)은 복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연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 이하 “법정배분비율”이라 함) 중 일부를 돌봄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 등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⁶⁾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기금이 법정배분기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에 포함되어 법정배분비율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정배분비율의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복권법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법안의 심사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돌봄기금의 재원 중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과징금·과태료는 위반행위 발생 규모, 단속 강도 등 외생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일시적·비정상적 수입으로 금액 변동이 크고 정기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4년 기준 과징금은 101억원,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기금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돌봄 관련 사업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종합 조정기제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돌봄기금이 단순히 사업 재원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별 돌봄사업을 생애 전주기 체계로 재편하고, 부처·회계 간 사업을 종합·조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면, 돌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노인(노인맞춤돌봄), 청년(영케어러 자기돌봄),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아동(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

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돌봄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돌봄기본법」</u>

2.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수정 요청의 서면 통보(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수정 요청 -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u>재검토·수정 요청 가능</u>	○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수정 요청 -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회계·기금 신설 심사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u>서면으로 심사 결과 요지 및 재검토·수정 요청 사유를 통보 가능</u>

현행법 제14조7)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

-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 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사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기금 신설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재정당국의 판단 근거와 보완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 한 심사) ① ~ ② (생 략)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 한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 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 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 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 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 <u>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요지와 재</u> <u>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사유를</u> <u>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0